의안번호	2218254
의 뢰 인	최형두 의원
회 답 일	2026. 5. 4.
추계번호	26F208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(SMR) 추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 추가 –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소형모듈원자로 등을 포함한 9개로 확대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(Small Modular Reactor, 이하 'SMR')를 포함하는 경우, 해당 분야의 연구 · 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등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높아짐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조제1항)

○ 국가전략기술※은 연구 · 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 ·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

※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[1]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	반도체 외	반도체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	
	중견기업[2]	8~20	20~35	30~45	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	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	30
	중견기업[2]	5~7.5	6~9	15~20	20~25
	대기업	1	3	15	2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○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현행 8개 분야에서 SMR을 포함한 9개 분야로 확대

-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2025년 2월「조세특례제한법」개정으로 인공지능 및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되어 현행 8개 분야가 되었음

※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

→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SMR 분야 추가

- 분야내 구체적인 기술은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[별표 7의2]에 규정

❑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는 SMR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R&D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연구개발시설·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○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SMR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따라 SMR 관련 기술은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의 에너지·환경 분야(세부분야: 원자력)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기술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2]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상 신성장·원천기술의 SMR 기술범위

기술분야		기술
에너지·환경 (원자력)	SMR	(SMR 설계 및 검증 기술) SMR 노심 설계 및 해석 검증기술, 계통 핵심기기 설계기술 등 (SMR 제조 기술)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 집합체 개발 및 제조기술 등

주: 기술분야의 ( )안은 분야내 세부기술을 의미

○ 또한, SMR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, 연구개발시설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국세청에 따르면 R&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까지는 구분이 가능하나, 기술 분야별로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
※ 참고로,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: 2024년 법인세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)

구분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19,714	6,164	2,682
통합투자세액공제	14,699	223	599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